제968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1.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신설) ㅇ 공제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공제상품에 대한 심사 기준, 기본분담금 조정기준 마련 ㅇ 공제 회계기준 표준화 및 재무건전성 준수 기준 설정, 경영실태평가 및 개선조치 근거 마련, 경영공시 확대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1.비중요
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1.시공하자 대상 확대(하자 판정 기준 및 조사방법, 하자 보수비용 산정 기준)(신설) ㅇ (하자판정) 바닥구조 구성층 두께가 설계도서보다 부족하거나, 측면완충재 누락·설치위치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또는 바닥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품질이 설계도서의 성능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시공하자 ㅇ (조사방법) 바닥구조의 구성층 두께 5개소 코어를 채취하거나 코어링 구멍을 통해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1.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두께 측정, 측면 완충재는 걸레받이를 제거하고 육안으로 조사, 바닥구조 재료별 품질은 시공당시 품질시험 성적서로 확인 ㅇ (보수비용 산정) 하자부분에 대한 바닥 철거비와 재시공비용을 합산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5조, 제72조, 제115조	
3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개정안 (산림청)	1.공간정보의 등록 및 활용(신설) ㅇ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인·허가의 신청·신고 등의 경우에 제출서류 중 ‘실측도’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표준공간정보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하도록 하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 가목·나목·라목의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인허가권자 및 전담기관의 장은 등록된 공간정보 파일을 산지전용지 등이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3 신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의3	1.비중요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특별교통수단 종사제한 결격기준(신설) ㅇ 성범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특별교통수단 종사 제한 기간 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8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이수 의무(신설) ㅇ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구체화(연 1회, 2시간 이상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1.비중요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신설) ㅇ 성범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기간 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1.비중요
7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기업신용조회회사 행위규칙 신설(신설) ㅇ 허위평가 및 평가자에게 특정평가결과 강요 금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2	1.비중요
8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신설) ㅇ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비중요
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신설) ㅇ 캠핑용자동차 제작 시 차실 내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조향장치(강화) ㅇ (개정) 범주 A의 자동명령조향기능(저속 또는 주차 운전 시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운전자의 요청에 의해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 – 시스템이 운전자의 움직임 및 위치를 모니터링하여 작동가능하도록 허용 ㅇ (개정) 범주 B의 자동명령조향기능(자동차의 횡방향 이동에 영향을 주어 선택된 차로 내에서 자동차가 유지되도록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 – 시스템 해제 조건 추가 최대횡방향가속도 제어 허용범위 확대 등 ㅇ (개정) 범주 C의 자동명령조향기능(운전자가 시작 및 작동시키고, 운전자가 명령하는 경우에 차로변경 등 단일 횡방향운전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 – 차로변경시작조건 추가(운전자가 방향지시등 점등 후 별도의 조작장치 작동 시), 방향지시등 소등기준 완화, 자동해제조건 일부 제외 등 ㅇ (개정) 수정조향기능(자동차 내부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 1개 이상의 바퀴의 조향각을 변화시키는 기능) – 경고시간 관련규정 강화 등	6.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ㅇ (신설) 원격제어운전기능(차량에 인접한 곳에서 원격제어 장치로 운전자가 작동시키는 기능으로 조향각, 가속도 및 감속도 제어를 직접 제공하는 저속운전을 위한 기능) – 새로운 형태의 첨단조향기능 장착 허용 ㅇ (신설) 위험완화기능(운전자의 운전조작이 없는 경우 목표 정지구역에 안전하게 정지시킬 목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비상 기능) – 새로운 형태의 첨단조향기능 장착 허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3.전조등(강화) ㅇ 자동차 주위 조도에 따른 전조등 자동 점등기능을 의무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4.주간주행등(강화) ㅇ 주간주행등 점등 시 후미등이 의무적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정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5.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강화) ㅇ 자동차에 사용가능한 발광소자광원 14개 카테고리 추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6.후부안전판(강화) ㅇ 3.5톤 이상 화물·특수차에 장착하는 후부안전판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10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농막 시설 설치기준 추가(강화) ㅇ 농막을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이미 설치된 농막도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함 ㅇ 농막의 연면적 산정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를 준용하도록 함 ㅇ 관련 조례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함 ▶농지법 제2조▶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설치기준(신설) ㅇ 기존 농막 대비 연면적을 확대한 임시 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임시 숙소 용도를 고려, 안전에 대한 기준 추가) ▶농지법 제2조▶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3.농지개량 기준 변경(강화) ㅇ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의 기준 신설 ▶농지법 제41조의2▶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4.농지개량행위의 신고(신설) ㅇ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성토나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개량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 ▶농지법 제41조의3▶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1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신설) ㅇ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받아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기준으로 강의인력,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1.중요 2.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신설) ㅇ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받아 인재양성 관련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정기준을 정하도록 함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3.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신설) ㅇ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기 위한 등록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4.전문양성인의 등록 등(신설) ㅇ 전문인양성인의 등록요건으로 기술사, 기능장,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0년이상,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이상 첨단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중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자로 한함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보고 및 오염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ㅇ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오염사고 발생시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4.1.2.)됨에 따라 영업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영업자가 실시하는 오염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 ▶식품위생법 제46조의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2.행정처분 기준 신설(신설)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오염사고 발생시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4.1.2.)됨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오염사고를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 시 행정처분을 신설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제46조의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1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폐광지역 카지노업자의 이용자 통계관리 및 교육·상담 실시 의무(신설)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 통계관리 및 교육, 상담 실시 의무 부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1.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신설) ㅇ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대상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배출허용총량 산정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1.비중요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1.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지정(신설) ㅇ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소 구체화 -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 -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어장관리해역, 항만의 수상구역 등 제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추가(강화) ㅇ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추가 -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추가(안 제22조제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6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신설)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5조 2.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 기준(신설) ㅇ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갖추어야할 기준과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6조 3.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등(신설) ㅇ 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 단체가 갖추어야할 기준과 절차, 방법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7조 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신설) ㅇ 식약처 등이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9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